

춘천지방법원 2022. 5. 19 선고 2021나33590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5. 19 선고 2021나33590 판결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6. 1 선고 2020가단2877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희

변 론 종 결 2022. 4. 14.

판 결 선 고 2022. 5. 19.

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6. 1. 선고 2020가단287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1,150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64. 12. 29. 접수 제99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여현주, 판사 신흥호, 판사 장두봉